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25 선고 2021가단531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20. 10. 22.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소321805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9. 22. ‘C은 원고에게 13,673,799원과 그 중 9,607,185원에 대하여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0. 13. 확정되었다.

나. D가 2020. 7. 16. 사망하자, 망 D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E, F, C이 그 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20. 10. 22. 유일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분할협약’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분할협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2/9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원상회복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인 원고는 그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인 C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손원락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G에 있는 H아파트 I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군 J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지층 아파트 286.04 , 1층 938.14 , 2층 내지 10층 각 876.4 , 11층 내지 15층 각 816.34 , 복지관 319.350 , 전기, 기계실 378.0 , 관리사무실 77.105 , 공동화장실 14.40 , 오수정화조 18.00 , 노인정 100.350 , 지하주차장 2618.7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구광역시 달서구 G 대 21930.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9층 K호 철근콘크리트조 49.80

대지권의 표시)

- 1 소유권대지권 21930.60분의 29.40 끝.

